O 시이 시		응시번호							
응 시 원 서		응시분야		미화원	1171				
성 명				생년월일			사진		
연락:	처	가택			휴대전화				
-	현주:	소	(우:)					
		직장	경		근무기간		근무부서	담당업무	
경력					~				
사항				~					
					~				
개인 정보 처리 동의	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(미화원) 채용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교육이 등이 등이 되었다면 모든 모이하네요.								
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. 2025. 2									
			S	응시자		(서	명 또는 인)		
신평	호등	등학교장	귀하						
						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
	OIHS		성 명		
접스	응시번호		생년월일		1171
주중	응시분야	교육공무직원 (미화원)		025. 2 !평초등학교	사진

응시원서 작성요령

- 1.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
- 2.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3.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
- 4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(3cm×4cm) 컬러사진(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)을 풀로 붙일 것(단, 응시원서에 사진 파일을 포함하여 컬러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)
- ※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본인식별이 곤란하거나 6개월 이전에 촬영한 사진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일반사진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포토샵 등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편집·수정한 사진
- 5.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,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정확하게 기재
- 6. 경력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미화원 근무경력을 기재(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에 한하여 기재)

자기소개서

응시자 교육공무직원(미화원) 채용시험
인석사양 성명 생년월일
※ 가치관, 지원동기, 직무수행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
※ 분량은 A4용지 1~2매로 본인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(워드 작성 가능).
2025년 2월 일
응시자 (서명)

1면 부족시 사용

2025년 2월 일	
응시자 (서명)	
0.1.1	

공정채용 확인서

신평초등학교는 학교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,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)의 직원이 있을 경우, 1번, 2번, 3번 작성
- ※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)의 직원이 없을 경우, 1번만 작성
- 1. 신평초등학교에서 본인의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) 의 직원이 근무하고 (있다 / 없다)
- 2.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성명 (본인)	친인척 직원						
(본인)	성명	소 속 기관	부서명	직급	본인과의 관계	기타	

3.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거나 행사하였다고 (생각한다 / 생각하지 않는다)

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,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,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본인

(서명)

신평초등학교장 귀하

[서식 4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 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
청구인	성명	응시번호			
주 소			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		
반환청구서류					
「채용절차의 공경 서류의 반환을 경	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같은 청구합니다.	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0	네 따라 위와	같이	채용
			년	월	일
	청	구인	(서명	또는	인)
신평초등학교	장 귀하				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교육공무직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

- 1.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2.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3월 14일 16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서식 4]를 작성하여 팩스(063-643-2380) 또는 우편 (우 55911 임실군 신평면 가덕로 683 행정실)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- 4.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3월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※ 기타 문의사항은 신평초등학교 행정실(063-643-700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7일

신평초등학교장

[서식 5]

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의5서식] 〈개정 2019. 6. 12.〉
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명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
본인은 신평초등학교의 취업(예정)자 또는 노무 제공(예정)자로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임실경찰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)
- 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- 4.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: 신평초등학교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: 교육공무직원 결격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 조회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교육공무직원 결격사유 유무 정보	2	교육공무직원 범죄경력 조회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 (필요시 기재사항)

(□주민등록 □외국인등록) 번호 :

-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 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년 2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: 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
전화번호: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※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

결격사유
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 하는 사람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
- 9.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
- 10.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
- 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사람
- 12.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

년 월 일

확인자: (서명)

신평초등학교장 귀하

겸업확인서

소속 : 직종 : 성명 :

위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(미화원)에 응시하기 전 부터 현재까지

1. 근무기관	
2. 직종	
3. 근무기간	
4. 담당업무	

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,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 공무직원 관리규정」 제1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확 인 자

(서명)

신평초등학교장 귀하